규 약

제정 : 창립 총회 2014년 7월 16일
1차 개정 : 제1차 대의원총회 2015년 2월 27일
2차 개정 : 제6차 대의원총회 2020년 5월 7일
3차 개정 : 제9차 대의원총회 2023년 3월 28일
4차 개정 : 제10차 대의원총회 2024년 3월 21일

총회 운영 규약

출자금 운영 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약

과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 회 운 영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주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

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7조 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년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년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년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금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책임출자금 미만인 경우
2.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자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기관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제2차 개정)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 단체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제4항에 의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하고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조합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유예】
①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① 조합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 한 경우

제6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 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